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경제총괄팀장 이수라】

가. 제안이유

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상점가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자치법규 수정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(안 제3조 제1항)
-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- 구역내 건축물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(안 제3조 제1항 제3호)
- 안 제3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개정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
-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지원대상에 “골목형상점가¹⁾”를 신설함에 따라 제정되었고, 이번 개정안은 제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²⁾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 된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
-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였음.
- 그리고, 안 제3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음.
- 참고로, 조례안 관련 타 자치구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, 그 중 12개 자치구에서 ‘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기준’을 삭제하였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해 ‘전

1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2) 중소벤처기업부의 ‘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(2022. 1. 11.)

통시장·상점가에 준하는 수준'으로 지원하면서 기준요건 또한 골목상권의 특성을 담지 못하여 지정을 어렵게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
- 향후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골목형상점가 신설 후 그간 지적되어 왔던 지정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이 활발해지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첨부 1

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타 자치구 현황

(‘23. 5월 기준)

연번	자치구	조례명	시행일	동의요건	비고 (개정)
1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12.24.	- 상인 5분의 3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2	중구	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12.29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3	용산구	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	'21.12.31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4	성동구	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'21.5.10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5	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	'22.10.27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6	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4.8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7	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2.12.30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8	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2.5.6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9	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	'21.5.7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10	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10.7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11	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	'22.9.15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12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5.4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13	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	'22.7.6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14	마포구	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7.8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
15	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	'22.4.7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16	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	'21.5.6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17	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	'22.11.10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18	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1.9.29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19	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0.12.31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20	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'22.7.14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21	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'22.10.27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22	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조례	'23.2.1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23	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'23.1.6.	- 상인 2분의 1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24	송파구	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'21.9.30.	- 상인 5분의 3 이상 -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-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	
25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	'22.9.7.	- 상인 2분의 1 이상	○

□ 「산업발전법」

제18조(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·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)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, 환경적 건전성,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(이하 “지속가능경영”이라 한다)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
3.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
4.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,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·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,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